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005 |
|----------|------|

2022. 3. 17.(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2년 3월 8일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2년 3월 17일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안용모)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범위 변경

가) 제1관서 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안 제2조~제4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용어 정비(안 제32조, 제65조)

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사항 반영(안 제34조)

- 폐교재산 활용 용도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 추가

- 재난 피해 시 한시 적용 감액 규정 신설

· 교육용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800

·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34조, 제36조, 제37조)

-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

-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

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수의매각 기준 정비(안 제41조)

○ 관사의 정의 및 보유에 관한 사항

가) 관사 사용자 범위 확대(공무원⇒교직원) (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관사 보유 근거 마련(안 제4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춘 용어 정비 외에 주요 개정사항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유재산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 및 신속한 사무 처리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며, 관사 보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를 공무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시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12월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되었음.

- 본 조례의 개정과 상위법 시행(2021.6.23.) 시기와의 불일치로 2021년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과 전년도 기준에 대한 감액 조정 적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관서”를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서”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제2관서”를 각각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관서”를 “제1관서(본청 소속 교육기관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관서”를 각각 “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22조제8항제2호 중 “손해에 대하여”를 “손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를 “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들”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도”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1천분”을 각각 “연간대부료의 1천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8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제34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1호 중 “제35조제2항제1호”를 “제35조제2항제3호”로, “5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외의”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30”을 “5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31조 제4항”을 “영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 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한 감액조정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를 “대하여 전부 감액 조정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6항”을 “영 제14조제7항”으로, “시중은행”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연 6회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41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2조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정의)”를 “(관사의 보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서 “관사”란”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2호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로,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공용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제3호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소속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에 대하여”를 각각 “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66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u>“제1관서”란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u></p> <p>3. (생 략)</p> <p>4. <u>“제2관서”란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직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u></p> <p>5. (생 략)</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생 략)</p> |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4. <u>“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u></p> <p>5. (현행과 같음)</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 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u>제1관서</u>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u>제2관서</u>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 <p>② ----- ----- <u>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서</u>----- ----- <u>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u>----- -----.</p> |
| <p>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 중 <u>제2관서</u>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p> | <p>③ ----- ----- <u>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u>----- -----.</p> |
| <p>④ (생략)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 <p>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 ① ----- ----- -----.</p> |
| <p>1. <u>제1관서</u>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 다. (생략)</p> <p>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교육지원청과 <u>제2관서</u>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p> <p>나. 교육지원청과 <u>제2관서</u>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p> <p>· 폐지</p> | <p>1. <u>제1관서(본청 소속 교육기관 제외)</u>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u>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u>----- -----</p> <p>나. --- <u>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u>----- ---</p> |

| 현행 | 개정안 |
|---|--|
| <p>다. 교육지원청과 <u>제2관서</u>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양여·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출자</p> | <p>다. ----<u>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u>----- ----- -----</p> |
| <p>라. (생략)</p> | <p>라. (현행과 같음)</p> |
| <p>마. 교육지원청과 <u>제2관서</u>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p> | <p>마. --- <u>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u>----</p> |
| <p>3. 교육장이 <u>제2관서</u>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 <p>3. ----- <u>제2관서 및 제1관서 중 본청 소속 교육기관</u>-----</p> |
| <p>가. ~ 다. (생략)</p> | <p>가. ~ 다. (현행과 같음)</p> |
| <p>② (생략)</p> |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p> | <p>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
| <p>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u>아니</u> 된다.</p> | <p>② ----- ----- ----- <u>안</u> -----</p> |
| <p>1.·2. (생략)</p> | <p>1.·2. (현행과 같음)</p> |
|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⑦ (생략)</p> | <p>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 ⑦ (현행과 같음)</p> |
| <p>⑧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받은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p> | <p>⑧ ----- ----- ----- -----.</p> |

| 현행 | 개정안 |
|--|---|
| <p>1. (생략)</p> <p>2.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나 <u>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u></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p> <p>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u>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u>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u>의한</u>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6. (생략)</p> <p>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p> | <p>1. (현행과 같음)</p> <p>2. ----- ----- <u>손해</u> ----- ----- ----- -----.</p> <p>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p> <p>① ----- ----- <u>않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 <u>따른</u>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u>감정평가업자</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u>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p> | <p>----- ----- ----- <u>감정평가법인등</u>----- ----- --- <u>감정평가법인등을</u> ----- ----- -----.</p> |
| <p>② 삭제</p> | |
| <p>③ (생략)</p> | <p>③ (현행과 같음)</p> |
|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업자</u>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 <p>④ ----- ----- <u>감정평가법인등</u>----- ----- ----- ----- -----.</p> |
| <p>⑤ <u>제1항도</u>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p> | <p>⑤ <u>제1항에도</u> ----- ----- ----- ----- ----- -----.</p> |
|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9항과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p> | <p>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제3항-----</p> |

| 현행 | 개정안 |
|--|---|
| <p>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 <p>----- ----- ----- ----- -----.</p> |
| <p>1. (생략)</p> <p>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1항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p> | <p>1. (현행과 같음)</p> <p>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 2제3항 ----- ----- -----</p> |
| <p>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 <p>② ----- ----- ----- ----- -----.</p> |
| <p>1. <u>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500</u></p> | <p>1. <u>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u>----- -- <u>연간대부료의 1천분</u>----</p> |
| <p>2. <u>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0</u></p> | <p>2. ----- <u>연간대부료의 1천분</u>-----</p> |
| <p><신설></p> |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감액비율을</p> |

| 현행 | 개정안 |
|--|---|
| <p>③·④ (생략)</p> <p>⑤ 법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p> <p>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p> <p><신설></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31조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p> | <p><u>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u></p> <p>1. <u>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800</u></p> <p>2. <u>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u></p> <p>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⑥ ----- ----- ----- -----.</p> <p>1. ----- <u>제35조제2항제3호</u>----- ----- 30</p> <p>2. <u>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u> ----- ----- 50</p> <p>3. <u>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u></p> <p>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u>영 제31조제4항</u>----- ----- -----</p> |

| 현행 | 개정안 |
|---|---|
| <p>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6조(대부료 등의 조정) -----</p> <p>-----</p> <p>-----</p> <p>-----</p> <p>----- 대하여 전부 감액 조정한다.</p> |
|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p> <p>② 영 제14조제6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p> <p>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p> <p>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p> | <p>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14조제7항 -----</p> <p>-----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시중은행-----</p> <p>----- 연 6회의 범위에서 -----.</p> <p><삭제></p> <p><삭제></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다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8. 삭제</p> <p><u><신설></u></p> <p><u><신설></u></p> |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 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
| <p>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u>경우에 있어서</u>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 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 <p>제42조(신탁의 종류) -----</p> <p>----- <u>경우</u></p> <p>-----</p> <p>-----</p> <p>-----.</p> |
| <p>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u>관사</u>”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u>공무원</u>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u>공용주택</u>을 말한다.</p> | <p>제49조(관사의 보유) <u>교육감</u>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2호에 따라 <u>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u> --- <u>교직원</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 2. (생략)</p> <p>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u>공무원</u>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p> | <p>----- <u>공용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을</u> 보유할 수 있다.</p> <p>제50조(관사의 구분)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교직원</u>----- -----.</p> |
| <p>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u>공무원</u>(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 <p>제52조(사용책임) ----- <u>교직원</u>----- ----- ----- -----.</p> <p>1. ~ 5. (현행과 같음)</p> |
| <p>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u>공무원</u>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p> | <p>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 <u>교직원</u>----- -----.</p> |
|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p>1. 사용대상 <u>소속 공무원</u>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p> | <p>제56조(사용료의 면제) ----- ----- ----- -----.</p> <p>1. ----- <u>교직원</u>----- -----</p> |

| 현행 | 개정안 |
|--|--|
| <p>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p> <p>3. (생략)</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p> <p>1. 다음 <u>각목</u>의 재산을 신고한 <u>자</u>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p> <p>가.·나. (생략)</p> <p>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u>자에</u>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아니</u> 된다.</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p> | <p>2. ----- <u>교직원</u>-----</p> <p>3. (현행과 같음)</p> <p>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p> <p>-----</p> <p>-----</p> <p>-----</p> <p>-----</p> <p>-----</p> <p>-----</p> <p>1. --- <u>각목</u>----- <u>자에게</u>-----</p> <p>-----</p> <p>-----</p> <p>-----</p> <p>-----</p> <p>-----</p> <p>가.·나. (현행과 같음)</p> <p>2. -----</p> <p>----- <u>자에게</u>-----</p> <p>-----</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 <u>안</u> -----</p> <p>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p> <p>-----</p> |

관계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0. 12. 22.>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와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익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2016. 7. 12.>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17. 7. 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1항제29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⑤ 기타 수의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의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 평정(價格評定)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 3. 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각각 폐교 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2. 18.>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 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7. 2., 2020. 2. 18.>

③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 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 7. 2.>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각계획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7. 2., 2020. 11. 24.>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7. 2., 2020. 2. 18.>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은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감액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3.>

1.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8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③ 시·도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 받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 2020. 6. 23.>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20. 2. 4., 2020. 12. 22.>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 8. 4., 2016. 12. 20.>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14. 1. 21., 2019. 12. 10., 2020. 12. 8., 2021. 6. 15., 2021. 10. 19.>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 7.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